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3.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저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의 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하였음.
  -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30년도까지 매장 내 1회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비닐봉투 사용금지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빨대, 컵뚜껑 등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려는 계획임.
  -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분위기를 확산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도민의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줄이고 홍보하여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안 제2조는 ‘1회용품’, ‘다회용품’, ‘공공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책임성을 부여하였음.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권장함으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들의  
능동적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입법예고('19. 9. 24.~'19. 10. 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